

	CCTV설치및운영규정	규정번호	3-1-27
		제정일자	2008.12.30.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내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CCTV설치) 대학내 모든 CCTV의 설치는 중요기자재, 비품의 도난방지 및 경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며,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3조(CCTV설치절차 및 운영) CCTV를 설치 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절차 및 운영방법을 준수한다.

1. 설치요청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설치목적, 설치위치, 기기의 종류, 수량, 촬영시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저장범위 및 기간, 처리방법, 정보활용방법, 정보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지정한 설치요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지원처를 경유하여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무위원회는 설치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검토하고 CCTV설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법규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한다.
3. 설치요청자가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에 설치용도 등을 안내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책임자가 저장된 자료를 설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저장된 자료는 관계법규와 총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관리) 정보취급자는 저장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제5조(교육)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제정 전에 설치된 CCTV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